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1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12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19가단4041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화, 담당변호사 이재용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손인준, 이재원, 장석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변론 종결 2024. 11. 15.

판결 선고 2024. 12. 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19가단404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E 대 114.4m²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28. 접수 제127606 호로, 피고 C 주식회사는 같은 지원 같은 날 접수 제127609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및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선고하였다"부터 제9행의 "중이다)"까지 부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소하였으나 항소 기각(이 법원 2024. 5. 24. 선고 2022나950) 및 상고 기각(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60078)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행의 "위 용역계약에"를 "이 사건 용역계약에"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인재

판사이의진

판사김양훈